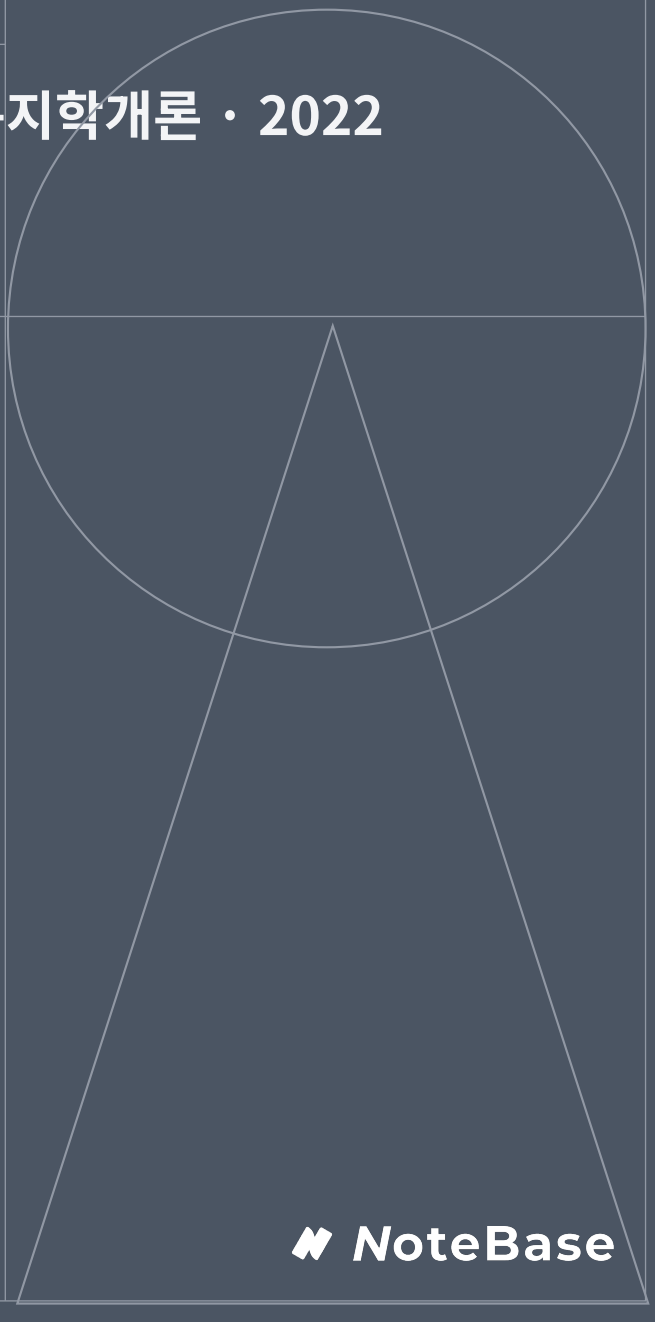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2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2

문 1. 로마니신(Romanyshyn)이 제시한 사회복지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성(universal)에서 특수성(special)으로

② 자선(charity)에서 시민의 권리(citizen right)로

③ 민간(voluntary) 지원에서 공공(public) 지원으로

④ 잔여적(residual) 복지에서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로마니신이 제시한 변화 방향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이다. 일부 어려운 사람만을 예외적으로 돕는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복지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른 방향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이다. 복지를 특정 빈곤층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한정하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활과 복지 욕구를 다루는 관점으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② O: 자선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는 **시민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복지 수급자를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는 변화이다.

③ O: 민간의 자발적인 구호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공공이 복지 제공을 책임진다는 뜻이며, 민간의 참여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잔여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사회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속적인 기능**으로 본다. 예외적인 구제에서 일상적인 사회제도로 발전하는 방향이다.

NoteBase

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어는?

① 소득인정액
② 최저생계비
③ 최저보장수준
④ 기준 중위소득

정답 1번

공통 해설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NoteBase

문 3. 다음의 설명은 카두신(Kadushin)이 분류한 아동복지서비스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함으로써 부모 역할이 충족되도록 돕는 서비스
◯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 보육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①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②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③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
④ 기능적 서비스(functional servic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하여 부족한 양육 기능을 메우는 것이 보충적 서비스이다. 보육서비스와 가정봉사원 파견은 부모의 양육 책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보충한다.

핵심 풀이

보충적 서비스: 부모가 실업·질병·장애 등으로 양육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회가 **부모 역할의 일부를 직접 맡아** 부족한 기능을 보충한다. 제시문의 '일부분 대행'이 결정적인 단서이다. 보육서비스와 가정봉사원 파견은 필요한 돌봄이나 가사 기능 등을 지원하여 부모가 아동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지적 서비스와의 구분: 지지적 서비스는 상담 등을 통해 **부모 스스로 양육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제시문은 부모의 능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가 돌봄 기능의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대리적 서비스와의 구분: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가 양육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 등으로 **가정 밖에서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이다. 제시문처럼 부모의 양육을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만 보충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4.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로시설
② 노인복지주택
③ 노인공동생활가정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 4번

①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oteBase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등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 구별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oteBase

문 5. 밀착가족(enmeshed family)과 유리가족(disengaged famil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착가족은 가족성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② 밀착가족은 가족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③ 유리가족은 가족성원 간 충성심이 부족하다.

④ 유리가족은 가족으로서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밀착가족은 가족성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서로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여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밀착가족은 가족성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서로의 감정과 행동에 지나치게 관여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상호작용이 과도하다**로 고쳐야 한다.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정서적 거리가 먼 것은 유리가족의 특징이다.

② O: 밀착가족은 성원 간 의존과 관여가 지나쳐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가족의 요구와 기대가 개인의 선택을 압도하므로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된다**.

③ O: 유리가족은 가족성원 사이의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서로의 생활과 감정에 대한 교류가 부족하다. 그 결과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약하다**.

④ O: 유리가족은 가족성원이 각자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호 관심과 지지가 부족하다. 한 성원이 어려움을 겪어도 다른 성원이 이를 알아차리거나 함께 대응하기 어려워 **가족의 보호·지원 기능이 약해진다**.

NoteBase

문 6. 체계이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홀론(holon)은 부분임과 동시에 전체라는 체계 속성을 의미한다.

② 상호성(reciprocity)은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체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항상성(homeostasis)은 체계 내외부에서 발생한 변화로 균형이 깨졌을 때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④ 엔트로피(entropy)는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외부 에너지 유입으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네겐트로피(부적 엔트로피)**에 관한 설명이다. 엔트로피는 체계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경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홀론은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인 체계의 속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가족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지만, 지역사회라는 더 큰 체계에서는 그 일부가 된다.

② O: 상호성은 체계의 구성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한다.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므로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과 전체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③ O: 항상성은 변화로 체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안정된 균형을 회복·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체계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상태를 조절한다는 뜻이다.

④ X: 엔트로피는 체계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고 무질서가 커져 체계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선지처럼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어 이러한 경향을 줄이고 체계의 질서와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것은 **네겐트로피(부적 엔트로피)**이다.

NoteBase

문 7.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 사례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옹호자(advocate) -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책 변화를 도모하였다.

② 행동가(activist)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연계해 주었다.

③ 중재자(mediator) - 이혼 조정 중인 부모의 자녀 양육권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④ 교육가(educator)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기관 연계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이다. 행동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 행동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옹호자는 불이익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며, 권익을 침해하는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 중증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책 변화를 도모**한 활동은 옹호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② X: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관을 연계한 것은 **중개자(broker)**의 역할이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한다. 행동가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당한 제도의 변화를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역할이므로, 이 사례의 '행동가'는 '중개자'로 고쳐야 한다.

③ O: 중재자는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의사소통과 협상을 도와 합의를 이끌어낸다.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갈등을 조정한 활동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양측의 합의를 돕는 중재자의 역할이다.

④ O: 교육가는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처하고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양육기술을 교육한 활동은 교육가의 역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중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은?

① 청소년쉼터
② 청소년자립지원관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④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답 3번

공통 해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 · 정서 ·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NoteBase

문 9.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

② 디딤씨앗통장 - 아동과 국가의 매칭펀드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 지원

③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건강, 기초학습, 사회성 함양, 부모 양육 지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④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만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범위이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는 다르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정한 지급 연령을 충족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는 동안 자립을 준비하고, 보호가 끝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통해 **보호 종료 전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② O: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 주며, 적립금은 학자금·취업·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활용한다.

③ O: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상태를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 기초학습, 사회성 발달, 부모 양육지원 등을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④ X: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기적 현금급여이지만, **만 18세 미만 전체가 지급 대상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아동의 범위인 '18세 미만'과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구분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2025년에는 8세 미만이었고, 2026년에는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NoteBase

문 10. 고려시대의 구빈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창(社倉)

② 제위보(濟危寶)

③ 혜민국(惠民局)

④ 흑창(黑倉)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창은 **조선시대**에 마을을 기반으로 운영한 곡물 대여제도이다. 빈민을 돕는 기능은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구빈제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창(社倉)은 **조선시대의 마을 단위 구휼제도**이다. 마을에 곡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식량이 부족한 주민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사창을 고려시대의 구빈제도로 보는 것은 시대 구분이 잘못된 것이다.

② O: 제위보는 고려 광종 때인 963년에 설치되었다.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 얻은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였다.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와 달리 기금의 운용 수익을 구빈사업의 재원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O: 혜민국은 고려 예종 때인 1112년에 설치된 대민 의료기관이다. 백성의 질병 치료와 의약 제공을 담당했으므로, 구빈을 곡물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의료 구제까지 포함**하면 고려시대의 구빈제도에 해당한다.

④ O: 흑창은 고려 태조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곡물 비축·구휼기구이다. 곡물을 확보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돕는 기능을 했으며, 성종 때인 986년에 확대·정비되어 **의창으로 개편**되었다.

NoteBase

문 11. 연대별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1960년대 - 「생활보호법」, 「군인연금법」

② 1970년대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모자복지법」

③ 1980년대 -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④ 1990년대 -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생활보호법」은 **1961년**, 「군인연금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두 법 모두 1960년대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활보호법」은 1961년, 「군인연금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두 법의 제정 시기가 모두 **1960년대**이므로 연대와 법률의 연결이 일치한다.

② X: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63년**, 「모자복지법」은 **1989년**에 제정되었다.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의 법률이므로 어느 것도 1970년대 제정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된 뒤 1999년 전부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뀐 법률이다. 따라서 두 법은 각각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연결해야 한다.

④ X: 「노인복지법」은 **1981년**,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0년대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로 고쳐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문 12.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에 찬성하지 않는다.

②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평등과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지지한다.

③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을 중시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④ 마르크스주의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불평등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경제를 중시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조절만으로는 실업과 빈곤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가 **시장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보므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국가 확대에 반대한다.

② O: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평등과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재분배와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한다.

③ X: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모든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실업·빈곤 등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는 설명은 시장의 한계와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이 분류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불평등의 근원을 자본주의의 생산수단 사유와 계급관계에서 찾는다.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보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시장을 보완하는 복지 확대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해결 방향으로 본다.

NoteBase

문 13.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적으로 동일한 현상도 개인의 믿음, 전통, 관습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ㄴ. 과거의 객관적 실체와 사실관계 파악이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전제한다.
ㄷ. 현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주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회구성주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의 객관적 실체를 밝혀내는 것보다, 클라이언트가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해석을 함께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보기별 해설

ㄱ. O: 사회구성주의는 현실에 대한 지식과 의미가 사회적 관계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같은 현상이라도 개인이 살아온 사회의 믿음·전통·관습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해석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ㄴ. X: 과거에 존재한 객관적 실체와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문제 해결의 기초로 삼는 설명은 사회구성주의의 강조점과 다르다. 사회구성주의는 **현재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지**에 주목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의 의미와 해결 가능성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의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자체의 확인만으로 문제의 의미와 해결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ㄷ. O: 사회구성주의에서 언어와 대화는 이미 정해진 현실을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기존 해석을 살펴보고 새로운 이해와 대안을 구성할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에 부합하는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등간(interval)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수량적인 상호 배타적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ㄴ. 속성들 간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한 것이다.
ㄷ.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 0값이 존재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등간척도는 측정값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여 차이를 비교할 수 있지만, 속성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절대 0값은 없다**. 예를 들어 섭씨 0°C는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보기별 해설

ㄱ. X: 비수량적인 속성을 서로 겹치지 않는 범주로 나누는 것은 **명목척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혈액형을 A형·B형·AB형·O형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며, 범주에 숫자를 붙여도 그 숫자는 크기나 간격을 나타내지 않는다. 등간척도는 단순한 범주 구분을 넘어 측정값 사이의 차이를 수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ㄴ. O: 등간척도는 측정값 사이의 **동일한 간격이 동일한 속성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섭씨 10°C와 20°C의 차이, 20°C와 30°C의 차이는 모두 10°C로 같다. 이처럼 값의 순서뿐 아니라 차이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다.

ㄷ. X: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절대 0값이 존재하는 것은 **비율척도**의 특징이다. 등간척도의 0은 임의로 정한 기준점이므로 속성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섭씨 20°C가 10°C보다 10°C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온도가 두 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등간척도의 설명에 해당하는 보기는 ㄴ뿐이므로, ㄴ만 제시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집단사회복지에서 파펠과 로스먼(Papell & Rothman)이 제시한 3가지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 모델에서는 개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도구로 집단을 활용한다.

② 치료 모델은 사회적 기능 수행상 문제가 있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 임상에서 사용된다.

③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성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며, 교육과 강의 중심으로 구성된다.

④ 상호작용 모델은 집단성원 간의 공생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기술과 정보 제공, 교육과 강의 중심'은 교육집단의 특성에 가깝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집단의 참여와 공동행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치료 모델은 **개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수단**으로 집단을 활용한다. 집단의 관계와 활동은 성원의 문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변화를 돕기 위해 조직된다.

② O: 치료 모델은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접근이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를 다루어 **사회적 기능을 회복·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③ X: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높여 사회변화를 추구**한다. 성원들이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공동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목적으로 교육과 강의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교육집단의 특성에 가깝다.

④ O: 상호작용 모델은 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원조 관계**를 중시한다. 성원은 도움을 받는 동시에 다른 성원을 돕는 주체가 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한다.

NoteBase

문 16. 사회복지실천의 기록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제중심기록은 문제영역을 목록화하여 각 문제에 대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사정, 계획을 기록한다.

② 이야기체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대화 형태로 기록한다.

③ 과정기록은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선택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④ 요약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성찰과 슈퍼비전을 위해, 면접 내용과 슈퍼바이저 코멘트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문제중심기록은 문제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각 문제의 진행 상황을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사정·계획(SOAP)**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문제별로 정보와 판단, 개입 계획을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제중심기록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목록화하고, 각 문제에 관한 진행 내용을 **SOAP 방식**으로 기록한다. S는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말한 주관적 정보, O는 관찰이나 검사로 확인한 객관적 정보, A는 이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사의 사정, P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다.

② X: 이야기체기록은 사회복지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과 서비스 내용을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모든 일을 대화 형태로 재현하는 방식은 아니다. 면접 중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과정기록의 특징이다.

③ X: 자료를 선택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요약기록**에 해당한다. 과정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화와 행동, 사회복지사의 느낌과 판단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상호작용과 개입 과정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④ X: 면접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성찰, 슈퍼바이저의 코멘트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과정기록**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면접에서 이루어진 개입을 돌아보고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요약기록은 일정 기간의 서비스 경과와 클라이언트의 변화 등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기록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ㄷ.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 주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 군 · 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NoteBase

ㄷ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 군 · 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NoteBase

문 18.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이다.

③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정답 2번

①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노령연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법 제49조 제1호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NoteBase

③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을 보호하는 부칙상 지급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5조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5조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 ·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NoteBase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연금액을 고시**한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2020.1.21, 2025.10.1>

NoteBase

문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2.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에 명시된 평가 업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1.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2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후원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복지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은 당해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관리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ㄴ.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ㄷ.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입 ·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ㄱ

시설거주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개인결연후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시설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2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NoteBase

ㄷ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NoteBase